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26
----------	-------

발의연월일 : 2025. 7. 10.

발 의 자 : 민병덕 · 이병진 · 한창민
이수진 · 이언주 · 최민희
송재봉 · 이재관 · 김 현
채현일 · 김종민 · 강준현
황명선 · 이정현 · 진선미
이해식 · 김준형 · 서영교
이재정 · 김재원 · 박성준
복기왕 · 송옥주 · 강경숙
김교홍 · 박수현 · 정태호
문대림 · 임호선 · 용혜인
이종배 · 이광희 · 정혜경
양부남 · 김문수 의원
(3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광복 80년이 경과해 현재 이후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경우 많은 독립 운동참여자와 그 후손들이 이미 사망하여 정작 그 후손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금의 수급 대상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에 한정하지 않고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3호 단서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
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자녀대 중 1명을 선순위 손자녀로 본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최초 보상금 수급자가 손자녀 또는 그 이하의 직계 비속인 경
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
리를 최초 보상금 수급자와 그 자녀대 각 1명에 한정하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대 사이에서 이전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며느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손자녀(孫子女). <u>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u>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u>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u>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자녀대중 1명을 선순위 손자녀로 본다.</u>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다만, 최초 보상금 수급자가 손자녀 또는 그 이하의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받을</u>

<u>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u> 1. <u>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 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 명</u> 2. <u>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 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u> <u>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 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u> <u>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u> ③ ~ ⑥ (생 략)	<u>권리를 최초 보상금 수급자와 그 자녀대 각 1명에 한정하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대 사이에서 이전되지 아니한다.</u> <u><삭 제></u> <u><삭 제></u> ③ ~ ⑥ (현행과 같음)
--	--